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현행 조례상 구청장 비서실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시되지 않아
비서실 관련 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 등 의회 견제
기능의 책임소재와 소관이 불명확한 실정임.

나. 이로 인해 비서실 업무가 총무과 등을 통해 간접 점검되는
한계가 있어, 비서실 관련 사무의 상시적·체계적 점검에 어려움이
존재함.

다. 이에 구청장 보좌 및 집행부 소통을 담당하는 비서실의 업무 성격과
행정 라인 연계성을 고려하여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에 구청장 비서실을
명시함으로써,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실효성 있게 다잡고자 함.

2. 주요내용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에 구청장 비서실 관련 사항을 신설함
(안 제5조제1항제2호 라목 신설)

3. 입법예고기간: 2026. 8. 18. ~ 2026. 8. 25. (8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의회사무국 의사팀 (전화: 2147-3662, FAX: 2147-3956, e-mail: khjjj@songpa.go.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송파구 홈페이지 (www.songpa.go.kr)와 송파구의회 홈페이지 (www.council.songpa.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